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3232
------	------

2025. 12.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김형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형재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박물관 및 공공미술관은 한 지역의 문화·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나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공공문화시설의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구 간 문화 향유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규정 추가(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권역별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 있는 설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고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권역별 박물관 및 미술관 균형 설립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¹⁾에 따라,

1) 제19조(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 · 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 · 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

2014년부터 4년간 수립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2018년 3월 8일 공고한 바 있음.

동 계획은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서울특별시를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 서울특별시 5개 권역 구분도 >



- 상기 서울특별시의 권역 구분을 기준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²⁾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2)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189개소이며, 권역별 평균은 37.8개소임. 그러나 도심권(89개소)에 전체의 약 47.1%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미술관의 경우, 도심권(27개소)과 동남권(12개소)에 76.5%가 편중되어 있으며, 서북권에는 등록된 미술관이 전무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 권역별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

기준일 : 2025. 11. 30.

권역	박물관								미술관								합계
	시립	구립	교육청	국립	사립	대학	소계	시립	구립	교육청	국립	사립	대학	소계	소계	소계	
평균	1.8	2.8	0.2	3.4	13.8	5.6	27.6	1.2	0.6	0.0	0.4	7.4	0.6	10.2	37.8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3	4	1	10	38	6	62	2	1	0	2	21	1	27	89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	3	0	2	7	4	16	0	0	0	0	0	0	0	16	
동북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4	4	0	1	5	16	30	2	1	0	0	4	1	8	38	
서남권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1	1	0	2	5	2	11	2	1	0	0	0	1	4	15	
동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	2	0	2	14	0	19	0	0	0	0	12	0	12	31	
총계		9	14	1	17	69	28	138	6	3	0	2	37	3	51	189	

- 물론 도심권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타 권역에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서북권과 서남권 거주 시민의 경우, 일상적인 문화 향유를 위해 상당한 이동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러한 현황은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거주 권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권역별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 있는 설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권역별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동 개정조례안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권역별 균형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무로만 규정3)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별도로 위임되어 있지 않음.

3) 제10조(설립과 운영)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의 신설 조문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별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아니하며⁴⁾,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⁵⁾하다고 판단됨.

- 나아가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은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설립 목표나 이행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규 설립 시, 부지 확보를 비롯하여 건립 및 운영 예산 등 큰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4)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5)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32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형재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유정희,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공공박물관 및 공공미술관은 한 지역의 문화·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나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공공문화시설의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구 간 문화 향유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규정 추가(안 제3조 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역별 균형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노력의무규정¹⁾ 특성상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